< 2019년 전기이륜차 보급사업 >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19. 1



목 차

1.	. 사업목적 및 개요
	가. 목 적
	나. 근 거
	다. 사업내용
	라. 운영주체별 역할
2.	. 보조금 집행 기준
	가. 보조금 지원 대상
	나. 보조금 지원 차량
	다. 보조금 지원 기준
	라. 의무 운행기간
	마. 보조금 부정수급 방지
3.	. 보조금의 집행 절차
	가. 보조금 집행 체계
	나. 보조금의 집행 절차(
4.	. 사후관리 및 보고
	가. 보조사업의 사후관리 ·····
	나. 보조사업의 집행상황 보고
	다. 보조사업의 완료 보고

1. 사업목적 및 개요

가. 목 적

- 대기질 개선과 온실가스 저감을 위하여 전기이륜차 구매 보조금을 지원하여 보급을 확대하고 기술개발 유도
- 전기이륜차 보급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국고보조금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

나. 근 거

-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제24조(저공해자동차의 구매)
- ○「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저공해자동차의 운행 등)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및「같은 법 시행령」관련규정

다. 사업내용

○ 사업명 : 전기이륜차 보급사업

○ 사업비 : 총 12,500백만원(국비 기준, 이월예산 별도)

(단위: 대, 백만원)

구 분	물량	총 예산	국비	지방비
총 계	10,000	25,000	12,500	12,500
서울특별시	1,000	2,500	1,250	1,250
부산광역시	1,000	2,500	1,250	1,250
대구광역시	2,000	5,000	2,500	2,500
인천광역시	600	1,500	750	750
광주광역시	300	750	375	375
대전광역시	300	750	375	375
울산광역시	300	750	375	375
세종특별자치시	100	250	125	125
경기도	1,000	2,500	1,250	1,250
강원도	200	500	250	250
충청북도	200	500	250	250
충청남도	200	500	250	250
전라북도	200	500	250	250
전라남도	200	500	250	250
경상북도	200	500	250	250
경상남도	200	500	250	250
제주특별자치도	2,000	5,000	2,500	2,500

※ 지방자치단체별 보급 물량은 추경 편성 및 보급 실적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라. 운영주체별 역할

- 환경부
 -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제·개정
 - 광역자치단체별 보조금 예산 배정
 - 사업운영 지도 점검, 사업 운영실태 시행결과 평가 등
 - 국고보조금 총괄 정산(보조금 적정 집행, 지방비 확보여부 등)
- 한국환경공단
 - 전기차(전기이륜차 포함) 보조금 시스템 운영
 - 전기이륜차 보조금 시스템관련 콜센터 운영
 - 보조금 지원 차량 전기자동차 통합포탈(ev.or.kr)에 등록
- 광역자치단체
 - 보조금 교부신청
 - 기초자치단체별 보조금 예산 배정(시·도비 지원)
 - 보조금 대상자 선정 및 보조금 집행(지방자치단체 보조사업)
- 기초자치단체
 - 보조금 교부신청
 - 보조금 대상자 선정 및 보조금 집행(지방자치단체 보조사업)

2. 보조금 집행 기준

가. 보조금 지원 대상

○ 개인·법인,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 등(중앙행정기관 제외)이 보조금 대상 전기이륜차를 신규 구매하여 국내에 신규 신고할 경우

나. 보조금 지원 차량

- 「자동차관리법」,「대기환경보전법」,「소음진동관리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해 자동차와 관련된 각종 인증을 모두 완료한 차량 및 「전기자동차 보급대상 평가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전기이륜차의 평가항목 및 기준에 적합한 차량
- 보조금 지원 이륜차는 환경부 전기자동차 통합포탈(ev.or.kr)에서 열람

다. 보조금 지원 기준

- 유형·규모 및 배터리용량, 출력 등 전기이륜차의 성능을 고려하여 차등 하여 지원하며 보조금 산출 방식은 별표 1과 같음
 - 또한, 내연기관 이륜차 사용 폐지 후 구매 시 20만원을 추가 지원함
 - * 폐차 여부는 사용폐지 증명서(필수)를 기본으로 하되 폐차장 증명서(확인증· 폐차사진 등)로 보완하여 확인
 - 모든 보조금은 국비와 지방비 50:50의 지원 비율을 유지하여야 함

구분	유형별		일병	반형		기타형
一一七	규모별	경형	소형	중형	대형	7148
보조금(만원)		200~230	220~280	250~310	280~350	280~350

^{*} 전기이륜차 분류기준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 1에 따름

라. 의무 운행기간

- 전기이륜차 구매 보조금을 받은 자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9조의3제1항에 따라 2년간 의무 운행하여야 함
 - 의무운행기간 내 차량 판매 시 의무운행기간은 구매자에게 인계되며, 의무운행기간 내 폐차 시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사전 승인 필요
 -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9조의3(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의 관리) 참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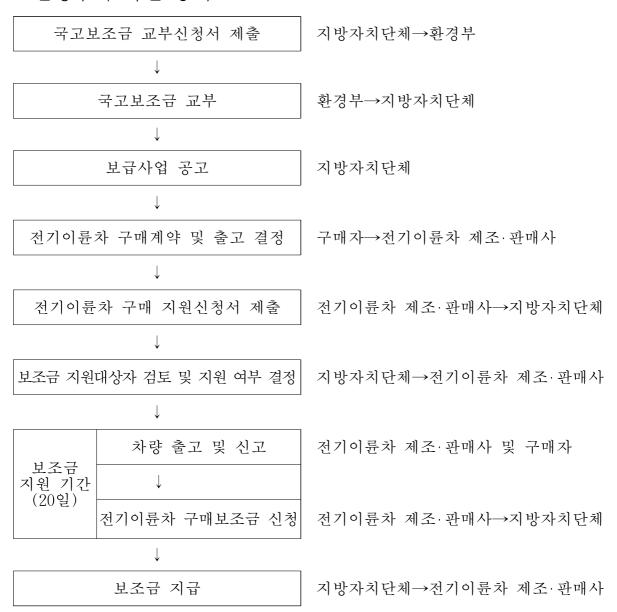
마. 보조금 부정수급 방지(목적 외 사용금지 등)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조금을 법령의 규정, 교부결정의 내용 등 교부 목적에 따라 사용하여야 하며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
- 특히, 전기이륜차 구입자가 보조금을 교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도록 관리함으로써 보조금 부정수급 문제를 사전에 방지하여야 함.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교부받은 국고보조금과 지방비보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자체의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함.

3. 보조금 집행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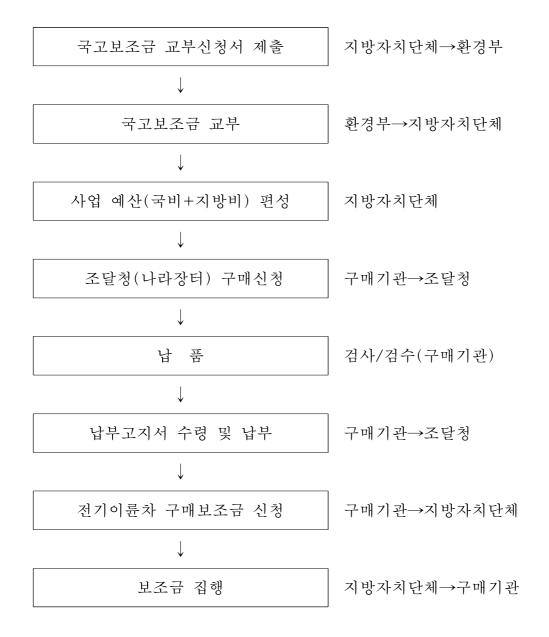
가. 보조금 집행 체계

○ (민간부문) 원칙적으로 차량 출고·신고순으로 집행하되 지방자치 단체 별 보급상황에 따라 별도 기준을 마련할 수 있으며, 해당 시 환경부에 사전 통지



- ※ 보조금 지원 기간 내 차량 출고 및 신고 후 구매보조금을 신청하여야 하며, 기간 초과시 지원 결정 자동 취소(자동 취소 후 익일 09시 지원가능 대수로 재 등록)
- ※ 구매자는 차량구매대금과 보조금의 차액을 제조·판매사에 납부하고, 전기이륜차 제조·판매사는 지방자치단체(국고보조금+지방보조금)로부터 보조금 수령

- ※ 제조·판매사는 직영점과 대리점을 포함(실 구매자 확인 필요)
- (공공부문) 조달청을 통해 구매할 경우 아래 절차에 따라 구매하되, 직접 구매하는 경우 민간부분의 절차에 따라 집행 가능



- 구매기관은 조달청 제3자 단가계약 처리절차에 의하여 구매신청 * 조달청 나라장터(홈페이지: www.g2b.go.kr) 참조
- 구매기관은 자체 예산으로 구매대금 납부 후 지방자치단체(보조 사업을 실시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보조금 지급요청
 - 지방자치단체는 지방보조금 지급여부를 결정한 후 보조금 집행

※ 조달청을 통해 구매하지 않는 경우 민간부분의 절차 등에 따라 보조금 집행

나. 보조금 집행 절차

□ 기본 원칙

○ 전기이륜차 보조금 집행을 전기자동차 통합포털(ev.or.kr) 내 보조금 지원 시스템을 통해서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동 시스템으로 처리하고자 않을 경우 환경부 승인을 득해야만 함

□ 민간 부문

- 수요조사
- 기초자치단체는 회계연도 시작 3개월 전까지 광역자치단체에 다음 연도 보조금 수요를 제출
- 광역자치단체는 회계연도 시작 2개월 전까지 환경부에 다음연도 보조금 수요를 제출
- 다만, 광역자치단체는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기초자치단체와 협의하여 보조금 추가수요를 환경부에 즉시 제출
- 내시액 확정
- 환경부는 회계연도 시작 전까지 광역자치단체별 보조금 집행실적 등을 감안하여 광역자치단체별 보조금 내시액 확정
- 광역자치단체는 회계연도 시작 전 또는 내시액 확정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기초자치단체별 보조금 집행실적 등을 감안하여 기초자치 단체별 보조금 내시액 확정
- 다만, 환경부는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연중

내시액 변경 통보 가능

- 보급사업 공고
- 광역자치단체 및 기초자치단체는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통보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보급사업 공고
- 다만, 환경부에 보급사업 공고일, 보급물량, 지방비, 지원 자격 등을 사전에 통보하여 환경부에서 일괄 공고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에서 보급사업 공고 생략가능
- 보조금 신청
- 기초자치단체는 매분기 시작 30일 전까지 별지 1호의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를 광역자치단체에 제출
- 광역자치단체는 매분기 시작 15일 전까지 별지 1호의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를 환경부에 제출
- 다만, 보조금을 즉시 집행 가능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 우에는 연중 수시로 국고보조금 교부신청 가능
- 보조금 교부결정
- 환경부는 광역자치단체의 보조금 신청내역, 직전 분기 보급실적, 지방비 반영 여부 등을 감안하여 광역자치단체에 보조금 교부
- 광역자치단체는 기초자치단체의 보조금 신청내역, 직전 분기 보급 실적, 지방비 반영 여부 등을 감안하여 기초자치단체에 보조금 교부
- 전기이륜차 구매신청서 접수
- 전기이륜차 구매를 희망하는 자는 제조·판매사와 구매계약을 체결 하고 별지 2호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조·판매사에 제출
- 제조·판매사는 구매신청서 접수 후 동 전기이륜차 출고·사용신고가 20일 이내 가능할 경우 신청서류를 지방자치단체에 제출
- 보조금 지원대상자 검토 및 지원 여부 결정

- 지방자치단체는 구매신청서가 접수되면 7일 이내에 제조·판매사에 보조금 지원가능 여부 통보
-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구매신청자 또는 제조·판매사에게 20일이내에 구매보조금 신청(출고·신고 완료)하지 않을 경우 보조금지원 결정이 자동 취소됨을 전자우편 또는 휴대전화 문자메세지등으로 통지할 것

○ 보조금 집행

- 제조·판매사는 출고된 전기이륜차에 대해 구매자가 사용신고하면 집행관련 증빙서류를 지방자치단체에 제출
- 지방자치단체는 거주지 증빙서류(지방보조금이 있는 경우), 출고 증빙 서류(세금계산서), 전기이륜차 신고필증 외 추가 서류 요청 지양
- 지방자치단체는 제출된 증빙서를 검토 후 제조·판매사가 지정한 계좌(지정계좌의 수를 최소)로 보조금 지급

□ 공공 부문

- 차량 구매
- 공공기관은 조달 절차에 따라 차량을 구매한 후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별지 2호의 신청서와 전기이륜차 신고필증 등 증빙서류를 함께 제출
- 지방자치단체는 출고증빙 서류(세금계산서), 전기이륜차 신고필증 외 추가 서류 요청 지양
- 보조금 신청
- 기초자치단체는 신청서를 접수받으면 시·군·구비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광역자치단체에 보조금 교부신청
- 광역자치단체는 기초자치단체의 보조금 신청에 따라 환경부에 국고보조금 교부신청

- 보조금 교부결정
- 환경부는 광역자치단체의 보조금 신청내역에 따라 광역자치단체에 보조금 교부
- 광역자치단체는 기초자치단체의 신청에 따라 기초자치단체에 보조금 교부
- 보조금 집행
- 공공기관에 시·군·구비를 지원하는 기초자치단체는 기초자치단체 에서 공공기관이 지정한 계좌로 보조금 지급
- 공공기관에 시·군·구비를 지원하지 않는 경우 광역자치단체에서 공공기관이 지정한 계좌로 보조금 지급

4. 사후관리 및 보고

가. 보조사업의 사후관리

○ 보조사업 수행기관은 관할 지역 내에 전기이륜차를 보급하는 제작· 판매사가 사후 수리체계를 구비하였는지 확인하고, 미흡할 시 이를 보완하도록 관리하여야 함

나. 보조사업의 집행상황 보고

- 보조사업자는 전기이륜차 보급 관리대장(별지 3호 서식)을 작성 하여 매월 종료일부터 5일내에 환경부장관에 보고
-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 집행 및 예산집행실적(별지 4호 서식)을 매분기 종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환경부장관에게 보고

다. 보조사업의 완료 보고

○ 보조사업 수행기관은 보조사업 수행 및 예산집행실적(별지 제5호 서식)을 당해 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환경부장관에 게 보고하여야 함 - 보조사업 수행기관은 「국가재정법」,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집행, 준공 및 정산처리하고, 보조금의 집행 잔액은 사업 완료 후 반납 조치하여야 함

[별표]

- 1. 2019년 전기이륜차 보조금 산출방식
- 2. 2019년 전기이륜차 보조금 지원대상 현황

[별지 서식]

- 1. 전기이륜차 구매 지원신청서
- 2.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 3. 전기이륜차 보급실적 관리대장
- 4. 보조사업 수행 및 예산집행 실적보고(진행보고)
- 5. 보조사업 수행 및 예산집행 실적보고(완료보고)

[별표 1]

2019년 전기이륜차 보조금 산출방식

□ 전기이륜차의 보조금은 배터리용량, 에너지소비율, 출력 등 전기 이륜차의 성능에 따라 차등하여 지급되며, 보조금 산출 방식은 다음과 같음

보조금 = 기본보조금 +
$$\left\{$$
배터리용량 \times 단위보조금 $\times(0.6\times\frac{$ 최고가중소비율}{가중소비율 $}+0.4\times\frac{$ 출력 $}{$ 최저출력 $}) \right\}$

- 기본보조금은 유형 및 규모에 따라 차등 지급함
 - 경형: 200만원, 소형: 220만원, 중형: 250만원, 대형·기타형: 280만원
- 단위보조금은 배터리용량에 따라 지급되는 보조금으로써 10만원으로 함
- 가중소비율은 전기이륜차의 저온성능을 반영한 소비율을 말함
 - 가중소비율 = 0.75×상온소비율 + 0.25×저온소비율
 - 소비율가중치 = 최고가중소비율* / 가중소비율
 - * 보조금 지원 차량 중 가장 높은 가중소비율
- 최저출력은 보조금 지원 차량 중 가장 낮은 출력을 말함
- 최고가중소비율과 최저출력은 2018.12.31일 기준 3개월이상 보조금 대상인 차종에 한함
- □ 관련 자료는 「전기자동차 보급대상 평가에 관한 규정」에 따라 한국환경공단에서 시행한 '보급대상 평가시험결과' 사용

[별표 2]

2019년 전기이륜차 보조금 지원대상 현황

□ 일반형

제조·	차종	차 명	배턴리용량		소비율 /km)	출력	지원금액
판매사	140	110	(kwh)	상온	저온	(kW)	(만원)
그린모빌리티		VALENCIA	2.16	41.2	46.8	3.8	230
_ 그년포필니디 		SEBIA	3.02	42.5	52.6	3.8	230
에코카		LUCE	1.92	44.6	49.5	3.2	223
시엔케이		DUO	2.50	42.6	48	3.6	230
와코	경형	2K2	2.52	43.5	49.2	3.7	230
㈜동양모터스		Vintage Classic	4.32	50	50.2	3.8	230
대림오토바이		EG300	2.16	39.9	43.1	3.6	229
이지웰페어		NIU Npro	2.10	36.9	39.4	2.3	230
한중모터스		Z3	1.56	34.6	40.2	3.5	223
씨엠파트너	소형	썬바이크II	4,56	57.9	63.3	5.5	266

□ 기타형

제조·	차 명	배터리용량 (kWb)		소비율 /km)	출력	지원금액
판매사	71 0	(kWh)	상온	저온	(kW)	(만원)
	MOTZ TRUCK	3.89	97.3	104.7	3.9	324
그린모빌리티	DELI-D4	4.54	84.3	106.2	3.8	333
_ 그인포필니디 	MOTZ-FAMI	4.54	87	106.4	3.8	332
	DELI-M	4.54	79.5	95.6	3.8	336
대풍EV자동차	Echo-ev2	4.08	90.8	106.7	3.2	323
쎄미시스코	R3G	7.78	98.7	121.1	18	350
성지기업	WIND-K2	2.40	61.9	52.4	1.1	309

(별지 제1호 서식)

<u>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u>

(전기이륜차 보급사업)

	신청기관							
	사업기간							
	71140101	금액						
	전년이월	물량						
	금년계획	금액						
신청	- 급단계획 -	물량						
내역	금회신청	금액						
	ㅁ쒸건경	물량						
	신청누계	금액						
		물량						
		관한 법률」 제16 리 교부를 신청합니		시행	령 제	7조0	세 따라	
				년		월	일	
				0	0	0	(관인)	
환경부 장관 귀하								
※ 첨부서류1. 보조금 신청액 산출근거 1부.2. 사업추진 세부일정 1부								

(별지 제2호 서식)

전기이륜차 구매 지원신청서

성 명(기관명)			[대표자						
생년월일(법인번호	<u>5</u>)		전	화번호						
구입신청										
제작사	모델명	수량	구	입예정일	보	.조금 신	청액			
내연기관 이륜차 폐지(해당 시)										
이륜자동차번호	차	명	비	기량		연식				
전기이륜차	보급사업기	라 관련하C	여 위와	같이 전기	비이륜치	 를 구입	하고지			
하오니 보조금 지금	급 가능여부	를 확인하	여 주시:	기 바랍니	나.					
					년	월	일			
			선	· 청 자	:		(인			
OOO시장 귀히	-									
,	민정보 수집	· 이용 및 :	제3자 위	탁·제공	동의서					
전기이륜차 구매 기										
제22조에 따라 귀하의 다음의 사항에 대히										
※ 귀하께서는 개인정	보 제공 및 홀	용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	으며, 제공사	항은 구입					
필요한 사항으로 7 1. 개인정보 수집 및			Ⅰ 어려움을	알려느립니	다.					
[수집ㆍ이용하려는										
· 개인식별정보(성			항 등)							
│ │ [개인정보의 수집 │ │ ○ 전기이륜차 구마			2							
[개인정보 이용 및						_				
·전기이륜차 보조	금 지급 완 _모 동의함	로 시까지 활	·용, 사업 			ŕ				
_	<u> </u>	- 이[피스]] 0-I VI						
2. 개인정보의 제3자 [위탁·제공되는 개										
[귀 듹·세등되는 개 · 개인식별정보(성			항 등)							
[개인정보를 위탁·		· •								
· (위탁) 전기이륜 ' 개인정보를 위탁 ·			•							
(전기이륜차 제		– –								
· (환경부, 한국환	-					용				
│		I의 개인정도	. 이용 및	모유기간]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본인은 본 "개인정보 하였으며, 이에 동의합		용 및 제3자	위탁·제공	공 동의서"	내용을	읽고 명확	히이히			
[이씨 그	1-1니.				년	월	잍			
				성	명 :		(인			

일 (인)

(별지 제3호 서식)

전기이륜차 보급실적 관리대장

시군명	이름 (법2명)	차종	수량	차대 번호	차량 번호	차량신고 일자	지출 일자	차량* 가격	보조금 (a+b+ c+d)	국비 (a)	도비 (b)	시군 비(c)	추가 보조금 (d)	자부담	환경부 여 <u>싼</u> 도

(별지 제4호 서식)

보조사업 수행 및 예산집행 분기보고

(전기이륜차 보급사업)

	보급	대	수
--	----	---	---

(단위 : 대)

구분	-	총	계	1/4	분기	2/4	분기	3/4	분기	4/4	분기
합	계	계획	실적	계획	실적	계획	실적	계획	실적	계획	실적
전기이는	륜차										

[비고] 차량별 보급 대수 : 000EV 0대, 00EV 0대, 0EV 0대

국고보조금	집햇실적

(단위 : 천원)

2019. . .

구분		금액
분기별 교부역	백(a)	
전년도 이월역	백(b)	
보조금 현액(c=	=a+b)	
	계	
	1/4분기	
집행액 누계	2/4분기	
	3/4분기	
	4/4분기	
집행잔의]	
다음연도 이	월액	

트ブ	사항((旦ス)	시으	ニ
一一	1/1/5/	、十世	ハエ	6

 \bigcirc

작성자 : 직급	성명	(인)
확인자 : 직급	성명	(0])

(별지 제5호 서식)

보조사업 수행 및 예산집행 완료보고

(전기이륜차 보급사업)

보급대	수
<u> </u>	

(단위 : 대)

구분		충	-계	1/4	분기	2/4	분기	3/4	분기	4/4	분기
합 겨]	계획	실적	계획	실적	계획	실적	계획	실적	계획	실적
전기이륜차											

		국고보조금	집행실적
--	--	-------	------

(단위 : 천원)

구분	금액	
당해 연도 그		
전년도 이		
보조금현액(c = a + b	
	1/4분기	
집행액 누계	2/4분기	
	3/4분기	
	4/4분기	
집행진		
이월역		
불용여		
이・불용		

- 가. 예산집행 증빙서류
- 나. 전기이륜차 구매자·기관 리스트
- 다. 기타 사업집행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019. . .

작성자 : 직급 성명 (인)

확인자 : 직급 성명 (인)